

2026년 2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해양경찰청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13개 분야 299명

- 전체

구분	경찰관[299명]																	
	경정[1]		경장[40]				순경[258]											
	5급 경채	해경 학과 (20)		함정 요원 (20)		항공 정비 (헬기)	드론	조선 기술	중특단	정보통신		과학수사		공채		구조	구급	특공 (전술)
항해		기관	항해	기관	전산					통신	지문	디지털 포렌식	남	여				
299	1	12	8	12	8	4	3	2	10	11	4	2	3	131	22	40	16	10
임용	본청(80)												지방청(219)					

- 지방청별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현황

채용분야(인원)	계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제주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219	16		55		29		61		58		
순경	공채	153	11	2	39	6	13	2	34	6	34	6
	구조	40	-		10		10		10		10	
	구급	16	3		-		4		5		4	
	특공(전술)	10	-		-		-		6		4	

※ 본인의 거주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청으로 원서접수(응시지역 선택)

2 시험 일정 및 절차

사전공고 / 원서접수		3. 3.(화) 17:00 / 3. 9.(월) 10:00 ~ 3. 19.(목) 17:00 <11일간>						
절차	시험방법	채용분야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장소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구술시험	경 정	5 급	경 채	4. 20.(월)	4. 28.(화) ~ 5. 1.(금)	인천	5. 6.(수) 10:00
		경 장	합 정	요 원				
		순 경	항공정비(헬기) 드론 조선기술 전산 통신 지문 디지털포렌식					
	실기시험	순 경	중 특 단	구 조	5. 7.(목)	5. 18.(월) ~ 5. 22.(금)	여수	5. 28.(목) 10:00
		경 장	해 경 학 과	특 공 (전 술)				
	필기시험	순 경	경 장	공 채	5. 29.(금)	6. 13.(토)	응시 지방청	7. 3.(금) 10:00
중 특 단			구 조					
2차 시험	적성·신체· 체력검사	모든 분야		7. 3.(금)	7. 11.(토) ~ 7. 16.(목)	응시지방청/ 인천(본청분야)	불합격자 현장고지	
		* 중특단, 구조, 특공은 체력검사 미실시						
3차 시험	서류전형	모든 분야		해당없음	7. 21.(화) ~ 7. 23.(목)	본청, 지방청	불합격자 개별통지	
4차 시험	면접시험	모든 분야		7. 24.(금)	8. 3.(월) ~ 8. 7.(금)	본청, 지방청	8. 20.(목) 10:00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일정 등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경찰청(응시 지방청) 누리집 및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 게재 예정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및 제10조(신규채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등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관련 법령(「경찰공무원법」 제8조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주요 법령은 <붙임 1> 참조

나. 응시연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별표3]

채용분야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5급 경채	경정	27세 이상 45세 이하	'80. 1. 1. ~ '99. 12. 31.
해경학과 합정요원	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85. 1. 1. ~ '06. 12. 31.
그 외 전 분야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85. 1. 1. ~ '08.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서류제출일에 '병적증명서' 제출

다. 신체조건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및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자 <붙임 7 참고>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라.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6. 8. 7) 기준으로 판단]

계급	분야	응시자격	
경정	5급 경채	경 력	○ (공무원경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중앙행정기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경장	해경 학과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붙임 4 참고>	
		※ 해양경찰 관련학과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고시」 참고	
경장	함정 요원	자격증	○ 4급 해기사 이상 면허 소지 후 국제항해(군·관공선 등 공무원 승선경력 미 포함)를 포함한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급 해기사 :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 ※ 국제항해 : 상선은 외국항 기항 여부, 어선은 원양어선 승선 기준 - 국내→외국, 외국→국내, A외국→B외국, B외국→A외국 모두 포함 - 승무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항 기록 증빙이 가능한 선원수첩 사본 제출 ※ 항해사는 항해 분야, 기관사는 기관 분야 경력만 인정(항해·기관 교차지원 불가)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 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	
순경	항공 정비	자격증	○ 항공정비사(헬리콥터) 자격증명 소지 후 2년 이상 헬리콥터 정비 경력이 있는 사람
순경	드론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자격증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소지한 사람
		학 위	○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 관련전공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학과 또는 전공이 드론 관련분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빙 가능해야 하고, 세부전공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관련분야 : 드론(항공) 제작, 드론(항공) 정비, 드론 연구개발, 드론 촬영, 드론 교육 ※ 관련전공 : 드론공학과, 드론정보공학과, 소방행정안전드론과, 드론공간정보과, 드론미디어과, 드론기계과, 무인항공드론과, AI드론과, 드론과, 스마트무인항공과, 공간정보드론과, 드론건설환경과, 스마트드론과, 정보통신드론과, 드론융합과, ICT드론과, 드론봇부사	

계급	분야	응시자격												
		관과, 컴퓨터드론과, 드론산업안전과, 드론융합학과, 드론제작운항과, 인공지능드론학과, 드론기계학과, 드론운용정비과, 드론항공과, 드론산업과, 국방드론항공과, 국방드론과, 무인항공기계과, 전투드론부사관과, 드론로봇공학과, 드론전공, 무인이동체공학전공, 드론학과, 드론 철도건설공학과,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무인항공학과, 무인기산업학과, 무인항공기계학과, 무인항공기학전공, 무인항공기학과, 드론응용학과, 드론응용전공, 항공드론학과, 무인기공학과, ICT군사학부(드론봇전공), 드론운용과, 드론전자과												
순경	조선 기술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table border="1"> <tr> <td>경 력</td> <td>○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td> </tr> <tr> <td>학 위</td> <td>○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td> </tr> </table>	경 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학 위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경 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학 위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조선소(설계/생산/품질관리) 또는 조선 관련 설계·감리·검사기관·연구소 * 관련학과 : 조선공학(선박, 해양)														
순경	중특단	※ 잠수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table border="1"> <tr> <td>경 력</td> <td>○ (공무원경력)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유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부대 :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군사경찰 대테러특수임무대, 신속대응사단 선견대, 여단수색중대, 여단정보중대(구,연대 수색중대), 지상정찰중대(구,정찰대), 기동대대·중대, 신속기동대대, 제2특수임무대대, 33군사경찰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 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 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군사경찰특임대)</td> </tr> </table>	경 력	○ (공무원경력)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유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부대 :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군사경찰 대테러특수임무대, 신속대응사단 선견대, 여단수색중대, 여단정보중대(구,연대 수색중대), 지상정찰중대(구,정찰대), 기동대대·중대, 신속기동대대, 제2특수임무대대, 33군사경찰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 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 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군사경찰특임대)										
		경 력	○ (공무원경력)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유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부대 :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군사경찰 대테러특수임무대, 신속대응사단 선견대, 여단수색중대, 여단정보중대(구,연대 수색중대), 지상정찰중대(구,정찰대), 기동대대·중대, 신속기동대대, 제2특수임무대대, 33군사경찰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 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 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군사경찰특임대)											
<table border="1"> <tr> <td>자 격 증</td> <td>○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td> </tr> <tr> <td></td> <td> <table border="1"> <tr> <td>기능장</td> <td>잠수</td> </tr> <tr> <td>산업기사</td> <td>잠수</td> </tr> <tr> <td>기능사</td> <td>잠수</td> </tr> <tr> <td>기타</td> <td>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td> </tr> </table> </td> </tr> <tr> <td></td> <td>※ 관련종목: 수영, 수중(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근대5종</td> </tr> </table>	자 격 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tr> <td>기능장</td> <td>잠수</td> </tr> <tr> <td>산업기사</td> <td>잠수</td> </tr> <tr> <td>기능사</td> <td>잠수</td> </tr> <tr> <td>기타</td> <td>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td> </tr> </table>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타	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 관련종목: 수영, 수중(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근대5종
자 격 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tr> <td>기능장</td> <td>잠수</td> </tr> <tr> <td>산업기사</td> <td>잠수</td> </tr> <tr> <td>기능사</td> <td>잠수</td> </tr> <tr> <td>기타</td> <td>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td> </tr> </table>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타	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타	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 관련종목: 수영, 수중(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근대5종													
순경	정보 통신 (전산)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table border="1"> <tr> <td>자 격 증</td> <td>○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td> </tr> <tr> <td></td> <td>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td> </tr> <tr> <td>기능장</td> <td>전자기기</td> </tr> <tr> <td>기사</td> <td>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td> </tr> <tr> <td>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td> </tr> </table> </td> </tr> </table>	자 격 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td> </tr> <tr> <td>기능장</td> <td>전자기기</td> </tr> <tr> <td>기사</td> <td>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td> </tr> <tr> <td>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td> </tr> </table>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
자 격 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td> </tr> <tr> <td>기능장</td> <td>전자기기</td> </tr> <tr> <td>기사</td> <td>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td> </tr> <tr> <td>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td> </tr> </table>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													

계급	분야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border="1"> <tr> <td>기능사</td> <td>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기능사	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								
※ 관련분야 :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빅데이터											
순경	정보통신(통신)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tr> <td>기술사</td> <td>정보통신</td> </tr> <tr> <td>기능장</td> <td>통신설비</td> </tr> <tr> <td>기사</td> <td>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처리</td> </tr> <tr> <td>산업기사</td> <td>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처리, 사무자동화</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border="1"> <tr> <td>기능사</td> <td>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능사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순경	과학수사(지문감정)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경력)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학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학위증명서 제출) ※ 유사 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관련분야 : ① 지문 감정·분류 실무 경력(감식·분석·AFIS 운영 등), ② 과학수사·법과학 등 관련 학위 분야에서 연구 또는 강의 경력 ※ 관련분야 학과 : 법과학 또는 과학수사학								
순경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력) 임용예정 직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증명서 상에는 담당업무(디지털포렌식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디지털포렌식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계급	분야	응시자격						
		※ 관련분야 :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 ※ 관련분야 학과 :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등 전산 관련 기술과 직접 관련성 있는 분야(전기 제외) ※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계통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순경	공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순경	구급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 응급실 소속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관리자 양성 관련 학과(교)에서 교원, 강사로 응급의료 관련 교과목을 강의한 경력 / 소방기관(상황실, 상황관리센터 포함)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공공)기관(군(軍)은 의무병, 의무부서관 이상 또는 군무원(응급구조 담당)·사업체 구급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상주하여 근무한 경력 - 소속(부서)·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순경	구조	※ 잠수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 (공무원경력)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유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부대 :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군사경찰 대테러특수임무대, 신속대응사단 선견대, 여단수색중대, 여단정보중대(구,연대 수색중대), 지상정찰중대(구,정찰대), 기동대대·중대, 신속기동대대, 제2특수임무대대, 33군사경찰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 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 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군사경찰특임대)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장</td> <td>잠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기사</td> <td>잠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사</td> <td>잠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td> <td>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td> </tr> </table> ※ 관련종목: 수영, 수중(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근대5종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타	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계급	분야	응시자격					
순경	특공 (전술)	※ 해양대테러작전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공무원경력)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유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부대 :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 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 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군사경찰특임대)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잠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잠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잠수</td> </tr> </table>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등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는 <붙임 2> 참조

[응시자격요건(경력채용)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는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을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며,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에 따라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 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 여부)를 명시하고,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인사담당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제출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상근여부, 상세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 [예] 관련분야 '공무원(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 1년'과 '민간 경력 2년'을 합산하여 '관련분야 경력 3년'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 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예. 주 00시간)이 기재 되어야 있어야 함
 -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응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 \times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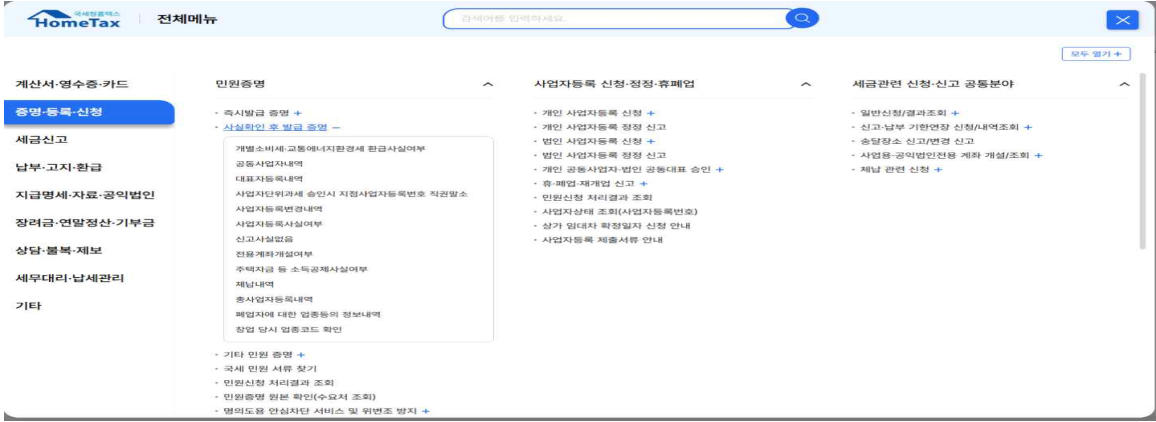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사실 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원

→ ①,②,③,④ 모두 제출 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홈텍스) 오른쪽 상단에  버튼 클릭 → '증명·등록·신청' 클릭 → '민원증명' 카테고리내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클릭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즉시발급 증명+' 클릭 → '소득금액증명(발급기한 설정)에서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사업자번호 확인 후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채용분야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학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관련학과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생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마. 가산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6. 3. 19.) 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은 4명 이상 채용분야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시험 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⑦ 천안함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는 그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할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가점 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 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가산 요건을 반드시 선택 및 기재해야 함(중복 적용 불가)
※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 사유 임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5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구술, 실기, 필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

구분	직급	채용분야	시 험 내 용
구술시험	경정	5급경채	○ 관련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붙임 3>을 구술로 평가
	경장	합정요원	
	순경	항공정비(헬기) 드론 선 기 전통 지 디지털포렌식 론술 산 신 문	

구분	직급	채용분야	시 험 내 용						
실기시험+필기시험	순경	중특단 / 구조/ 특공(전술)	<p>○ 실기시험 <붙임 3></p> <p>▶ 특공(전술), 구조</p> <table border="1"> <tr> <td>육상</td> <td>턱걸이, 100m허들(왕복), 2km 달리기</td> </tr> <tr> <td>잠수</td> <td>정밀 중성부력 트림자세 유지, 수중에서 잠수장비 탈·부착</td> </tr> <tr> <td>구조</td> <td>입영(중량 4kg착용), 구조수영(42m), 수영능력(100m)</td> </tr> </table> <p>○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p> <p>▶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p>	육상	턱걸이, 100m허들(왕복), 2km 달리기	잠수	정밀 중성부력 트림자세 유지, 수중에서 잠수장비 탈·부착	구조	입영(중량 4kg착용), 구조수영(42m), 수영능력(100m)
			육상	턱걸이, 100m허들(왕복), 2km 달리기					
잠수	정밀 중성부력 트림자세 유지, 수중에서 잠수장비 탈·부착								
구조	입영(중량 4kg착용), 구조수영(42m), 수영능력(100m)								
필기시험	경장	해경학과	<p>항해</p> <p>▶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형사법, 항해학</p>						
			<p>기관</p> <p>▶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형사법, 기관학</p>						
	순경	<p>공개채용</p> <p>▶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p> <p>▶ (선택) 해사법규, 헌법 中 1과목</p> <p>▶ (검정시험) 한국사·영어 ※ 각 기준점수(등급) 이상 취득</p>							
		구급	▶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응급구조 실무						

○ 필기시험 범위

- 해양경찰학개론 <붙임5 참고>
- 해사법규 <붙임6 참고>
- 헌법 : 헌법 총론, 기본권 총론·각론(통치구조론 제외)
- 형사법 : 형법 전체,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공소제기, 소송주체, 공판, 상소 분야 제외)
- 응급구조 실무: 응급환자평가, 환자 이송, 대량재난, 응급 의료관련 법령,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소아소생술, 전문외상처치술, 내과 응급, 특수 응급
- 잠수이론 : 잠수물리, 잠수생리, 잠수장비, 잠수작업

○ 필기시험 답안공개 및 이의제기

- 가답안 공개 : '26. 6. 13.(토) 13:00
- 이의제기 : '26. 6. 13.(토) 13:00 ~ 6. 16.(화) 13:00, 방법 별도 안내 예정
- 확정답안 공개 : '26. 6. 18.(목) 13:00
- 답안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및 해양경찰청(응시 지방청) 누리집에 공개

- 성적공개 : '26. 6. 24.(수) 10:00 ~ 6. 25.(목) 18:00,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개인별 성적 확인

○ 합격자 결정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 「동 규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 1차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해당 시험의 합격자로 처리

채용 분야		합격자 결정 방법
경정	5급경채	
경장	합정요원	
순경	항공정비(헬기) 드론 조선기술 전선 통신 지문 디지털포렌식	○ 실기(구술)시험 결과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경장	해경학과	○ 객관식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 순경 공채 분야 선택과목은 조정점수 적용
순경	공채	
순경	중특단 구조 특공(전술)	① 실기시험 전체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② 실기시험 합격자 중 객관식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총원

○ 합격자 제출 서류(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 아래 서류 중 ④번을 제외한 서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이용하여 제출
- ‘④ 신체검사서’는 봉인상태로 발급받아 종합적성검사 시 현장 제출

제출 서류

- ① 제출서류 총괄표
- ② 응시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경력) ❶경력증명서, ❷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❸소득금액 증명원(홈텍스 발행)
 - (학위) 관련 학위 사본(최종시험예정일 이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 ※ (해경학과 분야)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인정과목 이수 확인서
 - (자격증) 관련 자격증 사본
- ③ 주민등록초본(상세), 남자는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마약 6종 검사**가 가능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
 - **색각이상자**의 경우 반드시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정밀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지,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 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⑥ 면접시험 가산점 자격증 사본
- ⑦ 개인정보 제공,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⑧ (현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전역신청 내용 확인서

-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학위·경력증명서·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은 반드시 원본과 번역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제출 서류를 기한 내(별도 공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의 입증책임은 응시자에게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이 확정된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 서류 반환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 12 참고> 작성 후 반환 청구 가능
 - : '26. 8. 21.(금) ~ 9. 18.(금), kcgexam@korea.kr(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전자메일 제출

나. 2차 시험(적성·신체·체력검사)

○ 종합적성검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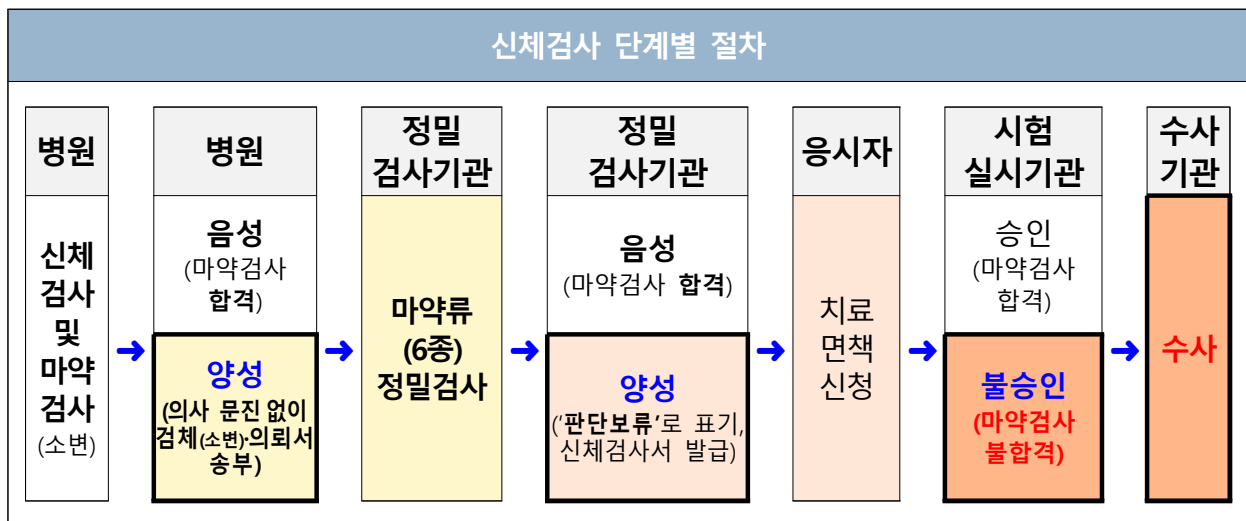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적성, 인성 검사 실시
- 합격·불합격 여부는 판정하지 않고, 면접시험 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 신체검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6조제1항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마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유효하게 발급 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평가

* 마약검사 가능병원 및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목록 <별첨 1 참고>



● 신체검사 유의사항

- 병원 방문 전 반드시 마약검사 가능여부 확인 후 신분증, 응시표, 사진 및 검사비용 등을 지참하고,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부담 함
- 모든 응시자는 신체검사 시 병원에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붙임 7> 작성해서 제출
-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함

- 신체검사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서에 기재된 판정일로부터 4월까지이며, 적성·신체·체력검사 종료일(7.16.)까지 유효해야 함
 -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병원의 압인 또는 계인, 담당의사 및 검진기관의 장의 서명 또는 인장을 통해 증명되어 함
 -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서 봉인상태로 발급을 받아 종합적성검사 시 현장 제출해야 함 (임의 개봉 시 인정불가)
- (합격자 결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모두 적격 시 합격 <붙임 7 참고>
 -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문신을 이유로 '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 신고한 응시자는 신체·체력검사 당일 사전조사서(사진 촬영 포함) 작성 후 외부위원을 포함한 '신체검사 심사위원회'(별도 일시 지정)를 구성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

○ 체력검사(종목식)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별표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6조제2항
- (평가종목) ① 100 m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악력 ⑤ 50 m 수영
 - ※ 기기 오작동·미작동 등 오류 발생 시 재측정
- (합격자 결정)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각 종목 실격 없이 총점(50점)의 40%(20점) 이상 득점 시 합격자로 결정 <붙임 8 참고>
 - ①~⑤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실격·기권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도핑검사)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 방지를 위해 응시자의 5%내 무작위 선정하여 검사 실시
 -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참조 <붙임 9 참고>

다. 3차 시험(서류전형)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7조

- 채용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합격자 결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가 확인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격자로 판정하여 합격자로 결정
- (가산점 확인) 응시자가 제출한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해당 여부 확인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개인별 가산점 공개 ('26.7.24.(금) 10:00) 후 소명기간('26.7.24.~7.27.)을 거쳐 최종 가산 점수 확정

라. 4차 시험(면접)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0조

- (시험방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1단계 집단면접 후 2단계 개별면접 실시
 - (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10점)
 - (2단계)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 및 발전가능성(10점)
 - (가산점) 해양경찰 업무 관련 자격증(5점) <붙임10 참고>
- 모든 응시자는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질문지는 응시자의 가치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2단계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함
- 자격증 가산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6조제9항 [별표3]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 취득 가능
 -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1차 시험 합격자 서류제출일(별도 공지)까지 제출해야 하며,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함
 - 응시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
 - 가산 자격증 중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

- (합격자 결정)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 이상(1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항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반영비율
5급 경채	○ 실기(구술) 75%, 면접 25%
함정요원, 항공정비, 드론, 조선기술, 전산, 통신, 지문, 디지털포렌식	○ 실기(구술) 50%, 체력 25%, 면접 25%
해경학과, 공채, 구급	○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중특단, 구조, 특공(전술)	○ 실기 45%, 필기 30%, 면접 25%

- 동점자 발생 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① 취업지원 대상자 → ② 필기시험 성적 → ③ 실기시험 성적 → ④ 면접시험 성적 → ⑤ 체력검사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 추가합격자 선정기간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마감일로부터 일주일간
- 최종합격 이후 정해진 기간 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원조사(조회) 등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할 수 있음
-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예정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기간 : '26. 3. 9.(월) 10:00 ~ 3. 19.(목) 17:00
- 방법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 이용
 - 접수마감일 17시 정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가 완료되어야만 접수 처리됨
 -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 내용 변경 및 원서접수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제출 완료하거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 수정 불가
 - 응시원서 제출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 제출기간 종료 후 변경 불가
- 취소기간 : (1차) 3. 20.(금) 09:00 ~ 3. 22.(일) 18:00
(2차) 5. 20.(수) 09:00 ~ 5. 22.(금) 18:00
- 응시수수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 **경정 이상 1만원, 경장~순경 5천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반환**
 - ※ 단,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서접수 취소기간까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마이페이지→응시현황→제출서류 메뉴)에 등록하면 응시수수료는 반환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응시표 출력 : '26. 3. 23.(월), 13: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마이페이지 이용)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적합여부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제출 이후 응시자격요건 변경은 불가하며, 자격요건 기재 착오 및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원서접수 취소 기간 중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제외한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원서접수 시 서류제출 [제출기한 : 원서접수 시(3.9. ~ 3.19.)]

채용분야	제출서류	제출방법
5급 경채, 함정요원 항공정비, 드론 조선기술, 전산, 통신 지문, 디지털포렌식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1개의 파일로 변환(PDF) 하여 제출 * [별첨 2] 제출서류 안내 참고 작성하여 및 제출 (파일명 : ○○분야_홍길동)
순경 공채	검정시험 성적표 1. 한국사능력시험 인증서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또는 사전등록 확인서	○인증서·성적표·확인서를 파일 (PDF 등)로 제출 * 화면 캡처한 파일은 인정 불가, 응시자 본인이 제출 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해경학과, 중특단, 구조, 구급, 특공(전술)	없음	-

7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공채순경만 해당)

가. 한국사능력시험 인증서 제출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6.12.(금))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획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하며 유효기간 없음
-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의 인증번호(예 : 38-123456)을
 - ① 정확하게 기재하고 ② ‘한국사능력시험 인증서’는 파일(PDF 등)로 제출해야 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제출

- 대상 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토플 (TOEFL)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토플 PBT방식 폐지에 따라 PBT 평가점수 제외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5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Advanced 510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2021.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6. 12.)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인정 범위는 토플(TOEFL)은 응시 국가 제한 없이 인정, 토익(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지텔프(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토셀(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 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이 불가함
 -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익, 토플, 텡스, 지텔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 확인 불가하여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해야 함
-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이 아닌 타 기관(경찰청 등)에 유효기간(2년)이 만료된 영어성적이 사전등록 되어 있는 경우, 응시자는 기한('26. 4. 30.)내 직접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서비스센터를 통해 성적 이관절차*를 완료하고 원서접수 및 추가등록 기간에 성적을 제출하기 바람
 - * '타 기관 사전등록 어학성적 이관신청서' 이용 <붙임11 참고>

-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명, 성적(점수), 시험일자, 등록번호(수험번호)를 ❶ 정확하게 기재하고 ❷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및 '사전등록 확인서' 또는 "성적표"를 파일(PDF 등)로 제출해야 함

다. 제출 시 유의사항

- 성적 조회 화면 캡처본은 인정 불가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검정과목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26. 6. 8.(월) 09:00 ~ 6. 12.(금) 18:00]내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https://gongmuwon.gosi.kr>)을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응시현황 메뉴에서 성적 제출 여부 반드시 확인

※ 추가 등록 기간 내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

8 교육 및 임용

- 교육 입교예정일 : '26. 10. 5.(월)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합격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교육 입교예정일까지 입교하지 않거나, 채용후보자 등록 등 임용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등 사유에 따라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임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 예정지에서 임용되며, 지방청별 채용분야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타 지방청으로 8년간 전보가 제한됨
- 최종합격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에 따라 ① 병역복무 ② 학업의 계속 ③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 임신·출산 ⑤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신청 가능하며 허용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예정

9 안내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소지해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전형 중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목이 나누어진 실기시험은 전(前) 단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또는 응시 지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명	연락처	관서명	연락처
해양경찰청	032-835-2436, 2536, 2636	남해지방해양경찰청	051-663-2416,2616
중부지방해양경찰청	032-728-8916,8917	동해지방해양경찰청	033-680-2416,2716
서해지방해양경찰청	061-288-2521,241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064-801-2416,2621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법」 시행예정 2027. 2. 28.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5급경채	경정	1명	본청, 지방청, 경찰서 (소속부서 포함)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기획업무 전반 ○ 정부 혁신·적극행정 발굴 및 주요정책 기획·추진 ○ 조직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 역량) 조직헌신,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 및 조정능력 ○ (업무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전문성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 행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 형법, 형사소송법 등 경찰공무원 업무처리를 위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 행정 관련 전문지식 ○ 정책 현안 분석 및 기획을 위한 전문지식
-------	---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경력)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합격한 후 중앙행정기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해경학과(항해)	경장	12명	함정 및 경찰서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경비, 해양수색구조, 연안 안전관리, 해상질서유지, 해양 관련 범죄 예방·진압) ○ 항해장비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항해 장비 운용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능력 ○ 상황인식/판단력,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장비 사용법 ○ 해사관계법령, 해양법 관련 지식 ○ 지문항법, 전파항법 등 항해에 관한 지식 ○ 함정의 구조·설비, 복원성 등 함정운용 관련 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전문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해양경찰 관련학과: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고시」 참고<붙임4>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해경학과(기관)	경장	8명	함정 및 경찰서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경비, 해양수색구조, 연안 안전관리, 해상질서유지, 해양 관련 범죄 예방·진압) ○ 함정 주·보조기관, 기관 장비 등 각종 설비 운영·관리 ○ 기관 비상 조치, 손상 제어, 기관 관리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함정 기관(주·보조기관) 유지·보수 능력, 기관 장비 운용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능력 ○ 상황인식/판단력,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정 주기관, 보조기관 등에 관한 지식 ○ 함정 기관 비상조치, 손상제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유체기계, 환경오염방지기기, 기계공작법, 전기기기 등에 관한 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전문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해양경찰 관련학과: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고시」 참고<붙임4>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함정요원(항해)	경장	12명	함정 및 경찰서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항해장비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항해 계획 수립 업무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 해석 및 적용 업무 ○ 국내·외 해상에서 함정 조함, 수색·구조, 통신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상황인식력, 판단력,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 함정 조함(국제항해)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항해 장비 운용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사영어 등 국제항해 관련 지식 ○ 지문 항법, 전파항법 등에 관한 지식 ○ 항해장비 사용법 ○ 해사관계법령, 해양법 관련 지식 ○ 함정의 구조·설비, 복원성 등 함정운용 관련 지식
-------	---

응시 자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4급 해기사 이상 면허 소지 후 국제항해(군·관공선 등 공무원 승선 경력 미포함)를 포함한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급 해기사: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 ※ 국제항해: 상선은 외국항 기항 여부, 어선은 원양어선 승선 기준 - 국내→외국, 외국→국내, A외국→B외국, B외국→A외국 모두 포함 - 승무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항 기록 증빙이 가능한 선원수첩 사본 제출 ※ 항해사는 항해 분야, 기관사는 기관 분야 경력만 인정(항해·기관 교차지원 불가)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함정요원(기관)	경장	8명	함정 및 경찰서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함정 주보조기관, 기관 장비 등 각종 설비 운영·관리 ○ 기관 비상 조치, 손상 제어, 기관 관리 업무 ○ 국내·외 해상에서 수색·구조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상황인식력, 판단력,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 함정 기관(주보조기관) 유지보수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기관 장비 운용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정 주기관, 보조기관 등에 관한 지식 ○ 함정 기관 비상조치, 손상제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유체기계, 환경오염방지기기, 기계공작법, 전기기기 등에 관한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4급 해기사 이상 면허 소지 후 국제항해(군·관공선 등 공무원 승선 경력 미포함)를 포함한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p>※ 4급 해기사: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p> <p>※ 국제항해: 상선은 외국항 기항 여부, 어선은 원양어선 승선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국, 외국→국내, A외국→B외국, B외국→A외국 모두 포함 - 승무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항 기록 증빙이 가능한 선원수첩 사본 제출 <p>※ 항해사는 항해 분야, 기관사는 기관 분야 경력만 인정(항해·기관 교차지원 불가)</p> <p>※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p>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항공정비	순경	4명	지방청 항공단(대)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기 고장·결함 원인 분석 및 항공기 정비·공정 조정통제 ○ 항공기 부품·자재·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기 정비 이력부, 서류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기 특수장비 및 공구 관리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협조성, 조직헌신,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지식, 정비 관련 행정능력, 문제해결력 등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구조에 대한 이해와 지식 ○ 기술도서와 기술회보 등의 관리 ○ 항공기 계획정비에 대한 이해
-------	--

응시 자격요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정비사(헬리콥터) 자격증명 소지 후 2년 이상 헬리콥터 정비 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드론	순경	3명	본청 및 소속기관 (함정, 파출소 포함)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기 운영 및 관리 ○ 무인기 운용인력 교육·훈련 ○ 무인기 유지보수 및 장비관리 ○ 무인기 관련 행정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업무 역량) 과업이해력, 문제해결력, 기획력, 의사소통능력, 협조성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비행체 관련법규 및 안전관리 ○ 드론촬영 영상 분석 및 SW활용 ○ 항공 및 드론관련 전문지식
-------	--

응시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조종자 자격증(한국교통안전공단)을 소지한 사람
	학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② 관련전공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학과 또는 전공이 드론 관련 분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빙 가능해야 하고, 세부전공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관련분야 : 드론(항공) 제작, 드론(항공) 정비, 드론 연구개발, 드론 촬영, 드론 교육 ※ 관련전공 : 드론공학과, 드론정보공학과, 소방행정안전드론과, 드론공간정보과, 드론미디어과, 드론기계과, 무인항공드론과, 시드론과, 드론과, 스마트무인항공과, 공간정보드론과, 드론건설환경과, 스마트드론과, 정보통신드론과, 드론융합과, ICT드론과, 드론봇부사관과, 컴퓨터드론과, 드론산업안전과, 드론융합학과, 드론제작운항과, 인공지능드론학과, 드론기계학과, 드론운용정비과, 드론항공과, 드론산업과, 국방드론항공과, 국방드론과, 무인항공기계과, 전투드론부사관과, 드론로봇공학과, 드론전공, 무인이동체공학전공, 드론학과, 드론-철도건설공학과, 사이버드론봇군사학과, 무인항공학과, 무인기산업학과, 무인항공기계학과, 무인항공기학전공, 무인항공기학과, 드론응용학과, 드론응용전공, 항공드론학과, 무인기공학과, ICT군사학부(드론봇전공), 드론운용과, 드론전자과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생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채용시기)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선기술	순경	2명	해양경찰청(인천) 함정건조현장(조선소)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정건조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 함정건조 관련 장비도입 기술 및 규격 검토 업무 ○ 함정 건조사업 공정관리 및 검사 업무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분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정건조 관련 기술적 전문지식 및 업무기획 능력 - 선박건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설계·건조관련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지식 ○ 선박 도면에 대한 이해와 용어, 건조 절차에 대한 지식 ○ 선박 건조에 대한 각종 규정 및 검사기준에 대한 지식 ○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이해와 집행업무에 대한 지식
-------	---

응시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 조선소(설계/생산/품질관리) 또는 조선 관련 설계·감리·검사기관·연구소 * 관련학과 : 조선공학(선박, 해양)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채용시기)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중특단(구조)	순경	10명	중특단(부산·목포·동해·제주)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등에 필요한 수색 및 구조 활동 ○ 구조장비 관리·운영 ○ 해양안전, 치안유지활동, 등의 지원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건강한 정신력, 체력 및 위기 대응 처리능력 ○ 팀워크, 의사소통 및 공감 능력, 신속한 상황 판단 ○ (분야 역량) 해양 수색·구조 수행 능력, 상황 분석 및 판단 능력, 협업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구조를 위한 전문 잠수 지식 및 구조장비 관리·운용 지식 등 ○ 수색구조 관련 대응 절차 및 관계 법령 ○ 해양 경찰학 개론, 잠수이론 등
-------	--

응시 자격요건	※ 잠수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경력)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유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특수부대: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군사경찰 대테러특수임무대, 신속대응사단 선견대, 여단 수색중대, 여단정보중대(구,연대 수색중대), 지상정찰중대(구,정찰대), 기동대대·중대, 신속기동대대, 제2특수임무대대, 33군사경찰경호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 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 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군사경찰특임대)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기능장</td> <td>잠수</td> </tr> <tr> <td>산업기사</td> <td>잠수</td> </tr> <tr> <td>기능사</td> <td>잠수</td> </tr> <tr> <td>기타</td> <td>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 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종목: 수영, 수중(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근대5종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타	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 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타	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 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정보통신(전산)	순경	11명	경찰서 및 함정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장비 도입·관리·운용 및 정보화시스템 개발·구축·운용·유지보수 ○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관한 사항 및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도입 및 유지보수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 클라우드(정보자원, 컴퓨팅)에 관한 사항 ○ 네트워크/IP 구축·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계급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 혁신 ○ (업무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등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일반,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 정보보호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 인공지능 등 관련 전문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능장</td> <td>전자기기</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사</td> <td>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td> </tr> </tabl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능사</td> <td>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td> </tr> </table>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											
※ 관련분야 :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빅데이터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정보통신(통신)	순경	4명	경찰서 및 함정 등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함정 레이더, 위성통신 등 항해통신장비 도입·관리·운영 ○ 암호자재의 보관·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무선국 및 주파수 확보·관리 ○ GMDSS 인프라 구축·관리·운영 ○ 위성조난시스템 구축·관리·운영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관리·운영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계급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 혁신 ○ (업무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등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장비 사업·운영을 위한 무선통신, 전파전자 관련 전문지식 ○ 전화·팩스·전자교환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전문지식 ○ 무선국 인·허가, 선박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수급관리에 관한 제반 지식 ○ 위성통신망의 이해 및 레이더에 관한 제반 지식
-------	---

응시 자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술사</td> <td>정보통신</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능장</td> <td>통신설비</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사</td> <td>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처리</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산업기사</td> <td>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처리, 사무자동화</td> </tr> </tabl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기능사</td> <td>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td> </tr> </table>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관련분야 : 통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방송통신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지문감정	순경	2명	해양경찰서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사사건 검시 및 신원 확인 ○ 현장 조사·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 ○ 경찰공무원 채용 관련 지문에 의한 신원 확인 ○ KOLAS(지문분야) 관련 업무 및 타 감정관 지문 감정 결과 교차검증·교육 ※ 신원 확인을 위한 증거분석 업무 이외 과학수사 업무 병행할 수 있음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윤리 의식, 공직 의식, 고객 지향 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문의 형성, 특성 및 종류에 대한 이해 ○ 지문 감정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이해 ○ 과학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지식
-------	--

응시 자격요건	※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력)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학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학위증명서 제출) ※ 유사 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제출 ○ [관련분야 학과] 법과학 또는 과학수사학

※ "응시 자격 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디지털포렌식	순경	3명	수사 부서 (해양경찰관서)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포렌식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 디지털증거 관리, 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리 ○ 현장 디지털 증거 식별·열람, 감정의뢰, 결과 해석 ※ 디지털포렌식 업무 이외 과학수사 업무 병행할 수 있음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에 대한 전문 지식 ○ 압수/수색/검증 등 영장집행과 디지털포렌식 절차 및 방법(관련 법률·규정 등) ○ 장치별(디스크, 휴대기기, CCTV 등 멀티미디어) 디지털포렌식, 삭제 데이터 및 물리 복구 원리, 복구·분석 소프트웨어 활용 방법 등에 관한 지식
-------	--

응시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간경력) 임용예정 직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공무원경력)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p>관련분야 경력: 디지털포렌식 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 상에는 담당업무(디지털포렌식 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학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②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디지털포렌식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관련분야 학과: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등 전산 관련 기술과 직접 관련성 있는 분야(전기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계통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채용시기)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구조	순경	40명	구조대, 항공대, 파출소, 함정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사고 등에 필요한 수색 및 구조 활동 ○ 구조장비 관리·운영 ○ 해양안전, 치안유지활동, 등의 지원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정렴성, 도덕성, 공익성) ○ 건강한 정신력, 체력 및 위기 대응 처리능력 ○ 팀워크, 의사소통 및 공감 능력, 신속한 상황 판단 ○ (분야 역량) 해양 수색·구조 수행 능력, 상황 분석 및 판단 능력, 협업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구조를 위한 전문 잠수 지식 및 구조장비 관리·운용 지식 등 ○ 수색구조 관련 대응 절차 및 관계 법령 ○ 해양 경찰학 개론, 잠수이론 등
-------	--

응시 자격요건	※ 잠수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경력)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유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특수부대: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군사경찰 대테러특수임무대, 신속대응사단 선견대, 여단수색중대, 여단정보중대(구,연대 수색중대), 지상정찰중대(구,정찰대), 기동대대·중대, 신속기동대대, 제2특수임무대대, 33군사경찰경호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 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 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군사경찰특임대)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기능장</td> <td>잠수</td> </tr> <tr> <td>산업기사</td> <td>잠수</td> </tr> <tr> <td>기능사</td> <td>잠수</td> </tr> <tr> <td>기타</td> <td>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td> </tr> </table> <p>※ 관련종목: 수영, 수중(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근대5종</p>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타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타	수상구조사(1급이상),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구급	순경	16명	중특단, 구조대, 항공대 파출소, 함정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및 도서지역 등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 응급의료 관련 시스템(구급장비 포함) 운영 및 관리 ○ 의약품 등 구급 관련 소모품 관리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윤리의식(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건강한 정신력, 체력 및 위기대응 능력 ○ 팀워크, 의사소통 및 공감 능력, 신속한 상황 판단 ○ 신속·정확한 환자 상태 파악 및 적절한 처치 제공 가능한 전문 지식 ○ 환자 처치 숙련도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관계 법령 등 지식 ○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응급구조 전문 지식 ○ 구급장비 및 응급처치 숙련도
-------	--

응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소속(부서)·담당업무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div style="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margin-top: 5px;"> <p>※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 응급실 소속 응급 구조사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관리자 양성 관련 학과(교)에서 교원, 강사로 응급의료 관련 교과목을 강의한 경력 / 소방기관(상황실, 상황관리센터 포함)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공공)기관(군(軍)은 의무병, 의무부사관 이상 또는 군무원(응급구조 담당)·사업체 구급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상주하여 근무한 경력</p> </div>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계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특공(전술)	순경	10명	특공대, 특수진압대, 함정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 작전 수행 ○ 해양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 해양 관련 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 마약·밀수·다중범죄 등 특수범죄 진압 지원 ○ 수상·수중 구조, 전복선박 등 구조활동 지원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분야 역량) 강인한 정신력, 체력, 사격능력, 위기대응 능력, 전략·전술적 이해도, 팀워크, 의사소통 및 공감 능력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리즘의 이해 및 관계 법령(「테러방지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 해상 대테러 유형별 전술 교리 ○ 대테러 장비(무기·탄약 등) 관리·운용 지식 ○ 해양경찰학 개론, 잠수이론 등
-------	---

응시 자격 요건	※ 해양대테러작전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경력)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유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특수부대: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 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 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 군사경찰특임대)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잠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산업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잠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능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잠수</td> </tr> </table>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실기(구술) 분야 주요업무 및 평가사항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구술시험 (실기)	5급 경채	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기획업무 전반 ▶ 정부 혁신·적극행정 발굴 및 주요정책 기획·추진 ▶ 조직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행정 관련 전문지식 ▶ 형법, 형사소송법 등 경찰공무원 업무처리를 위한 기본법령 숙지사항 ▶ 해양경찰청에 대한 이해도
	함정요원 (항해)	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항해장비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항해 계획 수립 업무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 해석 및 적용 업무 ▶ 국내·외 해상에서 함정 조함, 수색구조, 통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및 항해분야 기본지식 ▶ 직무일반(항해계기, 항법, 항해계획) ▶ 해사법규(COLREG, 해양법 및 국내법 등) 및 해사영어 ▶ 선박운용(선박조종, 선박구조, 해양통신 등)
	함정요원 (기관)	경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함정 주·보조기관, 기관 장비 등 각종 설비 운영·관리 ▶ 기관 비상 조치, 손상 제어, 기관 관리 업무 ▶ 국내·외 해상에서 수색·구조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및 기관분야 기본 지식 ▶ 해사영어(표준해사통신영어 등) ▶ 직무일반(내연기관, 외연기관 등) ▶ 전문관리(비상조치, 손상제어, 기관관리 등) ▶ 기계·전기·전자(유체역학, 열역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항공정비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정비품질보증에 대한 이해 ▶ 항공기 상태결함(고장)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 제작사 기술 도서 및 기술회보 검토 및 적용 ▶ 정비 이력 관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감항검사에 대한 이해 ▶ 항공기 상태결함(고장) 발생 시 고장탐구 절차 ▶ 제작사 기술도서 및 기술회보 독해 능력 ▶ 정비이력관리 능력
	드론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기 운영 및 관리 ▶ 무인기 운용인력 교육·훈련 ▶ 무인기 유지보수·장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무인기 운영 및 정책 이해도 ▶ 무인기 관련 법규, 안전규정, 운항 및 안전관리 지식 ▶ 무인기 조종, 촬영, S/W 활용 등 운용지식 ▶ 무인기 유지보수·정비 관련 지식 ▶ 무인기 교육, 훈련 관련 지식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조선기술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정건조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 함정건조 관련 장비도입 기술 및 규격 검토 ▶ 함정 건조사업 공정관리 및 검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건조 계획수립, 공정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식 ▶ 선박 설계, 건조 및 성능검사에 관한 지식 ▶ 선박건조 관련규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지식
	정보통신 (전산)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개발, DBMS·서버OS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 네트워크 구성 설계 및 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 사이버공격, 침해 대응,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정보통신 (통신)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해통신장비 도입·관리·운영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무선국 및 주파수 확보·관리 ▶ GMDSS 인프라, 위성조난시스템 및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장비 사업·운영을 위한 무선 통신, 전파전자 관련 전문지식 ▶ 전화·팩스·전자교환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전문지식 ▶ 무선국 인·허가, 선박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수급관리에 관한 제반 지식 ▶ 위성통신망의 이해 및 레이더에 관한 제반 지식
	지문감정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변사사건 검시 및 신원 확인 ▶ 현장조사·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 ▶ 경찰공무원 채용 관련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 KOLAS(지문분야) 관련 업무 및 타 감정관 지문 감정결과 교차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수사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지문에 대한 기본지식 등 ▶ 지문 형성 원리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생적 형성 원리 이해 - 용선의 개별성·불변성·보편성 이해 ▶ 지문 제도와 분류, 특징점 및 유형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분류체계(코어·델타) 판별 능력 ▶ 지문 채취·현출 기법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물별 적합 기법 선택 능력 - 물리·화학적 원리 이해 ▶ 지문 감정 절차 및 지문 대조·식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징점 종류 인식 및 선별 능력 - 지문 대조 능력 직접 평가
	디지털 포렌식	순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포렌식 증거 자료 수집 및 분석 ▶ 디지털증거 관리, 디지털 포렌식 장비관리 ▶ 현장 디지털 증거 식별·열람, 감정의뢰, 결과 해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검증 등 영장 집행, 디지털포렌식 절차 등 관련 법률·규정 지식 ▶ 장치별(디스크, 모바일, CCTV 등 멀티미디어) 디지털포렌식 지식 ▶ 삭제 데이터 및 물리 복구 지식 ▶ 디지털포렌식 도구에 대한 지식

○ 실기(구술)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5급 경채	경정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 해양경찰청에 대한 이해도	30%
		전문지식	▶ 행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	30%
			▶ 형법, 형사소송법 등 경찰공무원 업무처리를 위한 기본 법령 숙지사항	10%
			▶ 행정 관련 전문지식	10%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		
합정요원 (항해)	경장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 해양경찰 직무 전반 및 항해분야 기본지식	20%
		전문지식	▶ 직무일반 : 항해계기, 항법, 항해계획	20%
			▶ 해사법규 : COLREG, 해양법 및 국내법 등	30%
			▶ 해사영어 : 표준해사통신영어 등	10%
발전역량	▶ 선박운용 : 선박조종, 선박구조, 해양통신 등	20%		
합정요원 (기관)	경장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 해양경찰 직무 전반 및 기관분야 기본지식 ▶ 해사영어 : 표준해사통신영어 등	20%
		전문지식	▶ 직무일반 : 내연기관, 외연기관 등	20%
			▶ 전문관리 : 비상조치, 손상제어, 기관관리 등	30%
			▶ 기계-전기-전자 : 유체역학, 열역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10%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		
항공정비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 항공기 정비일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 항공기 부품·자재 및 장비관리 사항	10%
		전문지식	▶ 전기전자 회로의 이해	15%
			▶ 기체/엔진분야 고장탐구	15%
			▶ 기술교범/회보 독해	15%
			▶ 프로펠러 계통	15%
발전역량	▶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		

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드론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정책이해도	▶해양경찰 드론 도입 목적 및 조직 내 역할	10%
			▶해상 환경 드론 운용의 특수성 이해도	10%
		전문지식	▶드론 관련 법령의 이해도	15%
			▶항공이론 일반에 대한 이해도	15%
			▶드론 시스템 전문지식	20%
			▶드론 운용 관련 전문지식	20%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10%		
조선기술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선박설계, 건조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본지식	30%
		전문지식	▶선박건조 관련 이론에 관한 지식	20%
			▶도면 해석 및 전문용어 이해도	10%
			▶관련규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지식	10%
			▶경비함정에 대한 이해도	10%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		
정보통신 (전산)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정보화사업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 지식	20%
		전문지식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	30%
			▶DBMS, 서버OS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20%
			▶네트워크,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지식	10%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		
정보통신 (통신)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통신장비 사업·운영을 위한 무선통신, 전파전자 관련 전문지식	20%
		전문지식	▶전화·팩스·전자교환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전문지식	20%
			▶무선국 인·허가, 선박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수급관리에 관한 제반 지식	30%
			▶위성통신망의 이해 및 레이더에 관한 제반 지식	10%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		

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지문감정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과학수사 전반 및 지문에 대한 기본지식	20%
		전문지식	▶지문 형성 원리 이해	10%
			▶지문 제도와 분류, 특징점 및 유형 지식	10%
			▶지문 채취·현출 기법 지식	20%
			▶지문 감정 절차 및 지문 대조·식별 방법	20%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주요 경력 등 관련 질의	20%		
디지털 포렌식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영장집행 및 디지털 포렌식 절차 등 관련 법률·규정 지식	20%
		전문지식	▶장치별(디스크, 모바일, CCTV 등 멀티미디어)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포렌식 도구에 대한 지식	20%
			▶삭제 데이터 및 물리 복구 지식	20%
			▶해양 디지털 항해장비에 대한 이해	20%
			▶침수 디지털 기기의 복구 지식	20%

특공 · 구조 실기시험 평가표 [육상]

응시 분야		응시 번호		응시 지역		성명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 : 본인은 상기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본인필적 :				생년월일		

평가내용		배 점 기 준 (점) * 기준 미만 0점							득 점	확 인 (검점내용 가입)
		13	12	11	10	9	8	7		
택걸이	기준 (회)	30 이상	29~27	26~24	23~21	20~18	17~15	14~12	응시자 확인	(서명)
	기록									
왕복달리기 [100m 허들] <small>* 1/100초 미만 절사</small>	기준 (초)	36 이하	36.01~37.00	37.01~38.00	38.01~39.00	39.01~40.00	40.01~41.00	41.01~42.00	응시자 확인	(서명)
	기록									
평가내용		배 점 기 준 (점) * 기준 미만 0점							득 점	확 인 (검점내용 가입)
		14	13	12	11	10	9	8		
2km 달리기 <small>* 초 단위 미만 절사</small>	기준 (분:초)	6:50 이하	6:51~7:00	7:01~7:10	7:11~7:20	7:21~7:30	7:31~7:40	7:41~7:50	응시자 확인	(서명)
	기록									
득 점 계		만 점 (40점)								점

위원장	계급(직급)		성명	(인)
-----	--------	--	----	-----

특공 · 구조 실기시험 평가표 [잠수 · 구조]

응시 분야		응시 번호		응시 지역		성명	
----------	--	----------	--	----------	--	----	--

필적감정용 기재란	(예시문) : 본인은 상기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본인필적 :	생년 월일	
--------------	---	----------	--

평가내용		배점기준(점) * 기준 미만 0점								특점	확인 (검점내용 가입)	
잠수 능력 (21점)	잠수장비 결합	불량 * 잠수능력 시험응시 불가								(응시자 확인)		
	정밀 중성부력 트림자세 유지 (1분 후 마스크클리닝) * 초 단위 미만 절사	배점 (점)	13	12	11	10	9	8	7		(서명)	
		기준 (분:초)	2:00 이상	1:50~ 1:59	1:40~ 1:49	1:30~ 1:39	1:20~ 1:29	1:10~ 1:19	1:00~ 1:09			
		기록								응시자 확인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능력 * 초 단위 미만 절사	배점 (점)	8		7		6		5			(서명)
		기준 (분:초)	1:30이하		1:31~1:40		1:41~1:50		1:51~2:00			
	기록								응시자 확인			
평가내용		배점기준(점) * 기준 미만 0점								특점	확인 (검점내용 가입)	
구조 능력 (39점)	수영능력 (100m) * 초 단위 미만 절사	기준 (분:초)	1:10 이하	1:11~ 1:15	1:16~ 1:20	1:21~ 1:25	1:26~ 1:30	1:31~ 1:35	1:36~ 1:40		(서명)	
		기록								응시자 확인		
	구조수영 (42m) * 1/100초 미만 절사	기준 (분:초)	37:00 이하	37:01~ 40:00	40:01~ 43:00	43:01~ 46:00	46:01~ 49:00	49:01~ 52:00	52:01~ 55:00		(서명)	
		기록								응시자 확인		
	중량 4kg착용 손들고 떠있기 (발로만 상태유지) * 초 단위 미만 절사	기준 (분:초)	2:15 이상	2:14~ 2:10	2:09~ 2:05	2:04~ 2:00	1:59~ 1:55	1:54~ 1:50	1:49~ 1:45		(서명)	
		기록								응시자 확인		
특점계		만 점 (60점)								점		

위원장	계급(직급)		성명	(인)
-----	--------	--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3항제3호나목 관련)

인 정 과 목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해사법규, 해양경찰경무론, 해양경비론, 해양안전론, 해양수사(외사를 포함한다)론, 해양정보론, 해양치안정책론, 해양오염방제론, 선박운용론, 해양경찰영어, 해사영어, 선박일반(항해·기관), 내연기관, 보조기계, 수산법규, 수산학개론, 어구·어법·어로학, 어장학, 인명구조학(수영을 포함한다), 전기전자, 전파통신공학, 무도학(체포술을 포함한다), 해양법, 헌법, 항해학, 수색구조론, 해상교통관제론, 항해실습, 기관실습, 해양경찰법제, 범죄학, 해양기상학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

※ 각 과목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6학점으로 한다.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제3조 관련)

인정과목	비교해당과목
	비교해양경찰론, 해양경찰사, 형사법, 항해계기학, 해양경찰인권론, 해양레저학, 잠수학, 해양경찰연구방법론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2]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별 동일과목(제4조 관련)

인정과목	동 일 과 목
해양경찰학개론	해양경찰학(연습), 해양경찰학입문, 해양경찰학세미나, 해양경찰학개론 연습, 해양경찰학개론(I, II)
형법	형법총론(1, 2, I, II),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1, 2, I, II)
행정법	(경찰)행정법(I, II), 행정구제법
행정학	행정학의 이해, 행정학개론
국제법	국제법(I, II)
해사법규	해사법규(1, 2, I, II), 해사법규(연습)
해양경찰경무론	(해양경찰/경찰)조직관리론, 해양경찰조직과 인사관리, (해양경찰/경찰)인사관리론
해양경비론	
해양안전론	해상안전공학(및실습), 해양안전(캡스톤디자인), 해양안전학개론, 해양수상안전, 해상안전실습(I, II), 수상활동실무(I, II), 선박보안및안전, 해상안전, 해사안전법

인정과목	동 일 과 목
해양수사론 (외사 포함)	범죄수사학, 경찰수사론, (해양)범죄수사론, 국제해양범죄와 수사, 데이터베이스활용해양과학수사, 해양경찰현장실무, (해양/해상)사고처리론
해양정보론	해사정보론, (ArcGis적용)해양정보론, 해사정보외사론, 해사정보시스템(및실습)
해양치안정책론	해상민생치안, 해양치안정책(캡스톤디자인)
해양오염방제론	해양오염방제실습, 해양오염방제(캡스톤디자인), 유류 및 해양오염, 해양오염방지론, 직무일반과 해양오염방지(I, II), 해양물리환경학, 해양환경공학
선박운용론	선박운용학(I, II), 선박운용학(및실습), 특수선운용학, 선박조종론(학), 선박정비학
해양경찰영어	기관영어(실습), 경찰영어(I, II)
해사영어	해상교통영어, 해사영어(I, II), 해사통신영어(실습)
선박일반(항해·기관)	선박개론
내연기관	내연기관실습(I, II)
보조기계	선박보조기계, 기계공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제도 및 CAD(실습), 기계공작실습, 보조기계실습(I, II)
수산법규	수산해양법규, 수산법제
수산화개론	수산자원관리학, 수산행정관리론, 수산자원학(및실습)
어구·어법·어로학	어구어법학, 어법학(및실습), 어로실습, 어로학(및실습), 어로관리론, 해양생산기구학및실습, 해양생산기기학, 어업관리학, 어업정보학(및실습), 해양학, 어구공학(및실습), 전산어구설계(및연습), 어업기계공학(및실습), 어획물(처리/취급)및적부, 어업계측공학(및실습), 수산해양기계학
어장학	어장학(및실습), 해양어장환경학(및실습), 어장탐사공학, 어장정보처리(및실습/및분석), 해양환경어장학(및실습)
인명구조학 (수영 포함)	해양생존 및 인명구조, 구조수영(I, II), 인명구조학(I, II), 인명구조 및 실습
전기전자	전기공학, 전기기기(및실습), 선박전기전자(실습), 전기용접(실습), 전기·자동화(실습)(I, II), 전자공학, 시퀀스제어
전파통신공학	GMDSS통신(실습/운용), 해상통신공학(및실습)
무도학 (체포술 포함)	(경찰)무도(I, II), 무도학(및실습)(I, II), (경찰)체포술, 무술(1, 2, 3)
해양법	국제해양법, 해양법및국제협약, (직무일반및)국제해사협약, 해양법과국가주권, 해역과해양법의이해

인정과목	동 일 과 목
헌법	헌법총론, 헌법각론, 헌법(I, II)
항해학	항해학(I, II), 항해학개론, 지문항해학(및실습), 전파항해학(및실습), (전파)천문항해학(및실습), 기본항해학, 천문항해
수색구조론	수색구조 및 비상관제, 선박안전 및 수색구조, 빅데이터활용수색구조론
해상교통관제론	교통관리학, 해상교통법, 해상교통비상관제학, 해상교통관제설비학, 해상교통관리(론), 해상교통관제론, 해상교통론, 비상관제, 항로표지와 해상관제설비론
항해실습	(연)근해승선실습, 원양승선실습(1, 2), 종합승선실습, (기초안전)승선실습, 연안승선실습, 기초승선실습, 승선실습(I, II, III), 승선항해실습(I, II), 항해실습(1, 2, 3, 4)
기관실습	해기현장실습, 기관실습(I, II), 디젤기관실습
해양경찰법제	해양경찰법제(I, II), 해양경찰실무법규, (해양)경찰법, 해양경찰작용법, 해양관계법이해
범죄학	범죄대책론, (해양)범죄예방론, 해양범죄론, 빅데이터활용해양범죄통계학, 범죄의 이해, 형사정책, 범죄학개론
해양기상학	해양기상, 해양기상학(및실습), 해상일기분석과 실무예보
비교해양경찰론	
해양경찰사	
형사법	형사사례및판례, 형사법연습
항해계기학	항해계측공학(및실습/및실습), 알파및레이다항법, 레이더항법(및실습), 레이더(더)시뮬레이션(실습), 레이더ARPA및시뮬레이션실습, 전자해도(및실습), 전자해도(ECDIS)실습, 레이더및관제설비학, 항해시스템, 항해계기(및)실습, 전파항법및실습, 선박조종시뮬레이션실습
해양경찰인권론	경찰과 인권
해양레저학	해양레저실무, 해양스포츠, 수상레저실무, 스포츠수영
잠수학	잠수론, 스포츠잠수, 산업잠수, 수중안전활동, 수중활동실무(I, II)
해양경찰연구방법론	

○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8호 『2024년 해양경찰 공무원 연간 채용계획 등 공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

인정과목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
해양경찰학개론	해양경찰학입문, 해양경찰학개론 I, 해양경찰학개론II, 해양경찰학개론연습
	해양경찰학개론, 해양경찰학연습
	해양경찰학, 해양경찰학세미나
형법	형법총론1, 형법총론2, 형법각론
	형법총론 I, 형법총론II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1, 형사소송법2
	형사소송법 I, 형사소송법II
행정법	행정법 I, 행정법II
국제법	국제법 I, 국제법II
해사법규	해사법규, 해사법규연습
	해사법규1, 해사법규2
	해사법규 I, 해사법규II
해양안전론	해상안전실습 I, 해상안전실습II
	수상활동실무 I, 수상활동실무II
해양오염방제론	해양오염방제론, 해양오염방제실습
	직무일반과해양오염방지 I, 직무일반과해양오염방지II
선박운용론	선박운용학 I, 선박운용학II
해양경찰영어	기관영어, 기관영어실습
	경찰영어 I, 경찰영어II
해사영어	해사영어 I, 해사영어II
내연기관	내연기관, 내연기관실습
	내연기관실습 I, 내연기관실습II

인정과목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
보조기계	보조기계실습 I, 보조기계실습II
	기계제도및CAD, 기계제도및CAD실습
인명구조학 (수영포함)	구조수영 I, 구조수영II
	인명구조학 I, 인명구조학II
전기전자	전기.자동화실습 I, 전기.자동화실습II
무도학 (체포술포함)	무도 I, 무도II
	무도학 I, 무도학II
	무술1, 무술2, 무술3
헌법	헌법총론, 헌법각론
	헌법 I, 헌법II
항해학	항해학 I, 항해학II
항해실습	연근해승선실습, 원양승선실습1, 원양승선실습2
	기초안전승선실습, 연안승선실습, 근해승선실습, 원양승선실습
	승선실습, 종합승선실습
	승선실습 I, 승선실습II
	기초승선실습, 승선실습 I, 승선실습II, 승선실습III
	승선항해실습 I, 승선항해실습II
	항해실습1, 항해실습2, 항해실습3, 항해실습4
기관실습	기관실습 I, 기관실습II
해양경찰법제	해양경찰법제 I, 해양경찰법제II
잠수학	수중활동실무 I, 수중활동실무II

1. 동일한 과목이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는 경우
2. 동일한 과목이 1, 2, 3(또는 I, II, III)으로 나뉘는 경우
3. 동일한 과목이 기본(입문·기초) 과목과 심화 과목(연습·실습·실험·종합 등)으로 나뉘는 경우
4. 항해실습 과목의 실습구역이 연안·근해·원양 등으로 나뉘는 경우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동일·유사)과목 이수 확인서

- 학교/학부(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연번	과목명	학점	성적	연번	과목명	학점	성적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총	학점

위 사람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 00학점을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학교 ○○ 총장 ○ ○ ○ (직인)

담당자	(부서·직위)	성명	(인)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m²)

▶ 인정과목과 동일과목 모두를 인정하나,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음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

- 학교/학부(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이 아래와 같이 이수한 과목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 및 동일과목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니, 유사과목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연번	인정과목명	동일과목명	이수과목명	학점	성적

20 년 월 일

○○ 대학교 ○○ 총장 ○ ○ ○ (직인)

담당자	(부서·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인정·동일과목의 과목명이 다를 경우에는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추가 제출

목 차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 념	해양경찰의 의의	해양경찰의 임무, 수단, 관할, 이념, 윤리 등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시대적 구분에 따른 연혁 및 제도
	비교 해양경찰	국내·외 관련기관 비교
법적 토대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찰조직법 내용·근거, 해양경찰 기관
	해양경찰 작용	해양경찰작용법 내용·근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해양경찰 작용의 형태 및 구제 수단
행 정	해양경찰 행정관리	조직, 정책, 인사, 재정, 홍보, 보안, 장비, 행정응원, 개혁·변화관리 등
	해양경찰 통제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기본요소, 통제유형 등
경 비	해양경비	경비의 의의, 경비세력 운용, 해상검문검색, 불법선박 단속 등
	작전·위기관리	통합방위작전, 국가 위기관리, 비상대비 등
	해양대테러·경호	해양대테러 활동, 해상경호 등
구조안전	수색구조	수색구조 제도, 체계, 절차 등
	해양안전	파출소·출장소 운영, 현장 안전관리 등
	수상레저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 조종면허, 수상레저 안전관리, 수상레저 사업 등
	해상교통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해상교통관제 등
수사정보	수 사	수사의 개념, 법적 근거, 수사서류, 수사절차·활동, 수사행정, 과학수사 등
	정 보	정보의 특성, 정보의 분류, 정보활동 및 한계, 정보의 순환 등
	보 안	방첩활동, 보안수사, 대남전략 노선과 대남공작기구, 대공상황 등
	외 사	외사유형, 외사대상, 외사수사·정보활동, 국제협력 등
해양환경	해양오염방제	방제계획, 오염사고대비대응, 방제장비 및 기자재 운용 등
	해양오염예방	해양오염 감시·단속 등

* 조직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 可

붙임 6

해사법규 출제범위

연번	법령명 ※ 하위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포함
1	낙시 관리 및 육성법
2	도선법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6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8	선박법
9	선박안전 조업규칙
10	선박안전법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2	선박직원법
13	선원법
14	수산업법
1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16	수상레저안전법
1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19	양식산업발전법
20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21	어선법
2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23	어촌·어항법
2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7	항만법
28	항만운송사업법
29	해사안전기본법
30	해상교통안전법
3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해양경비법
33	해양과학조사법
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36	해양환경관리법
37	해운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평가 항목	내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 가능한 상태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 동시에 자연스럽게 앉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앉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cm × 4.5cm)

①시험실시기관	② 응시계급·분야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색 신 (색 각)	청 력
	우: ()		
			우: ()dB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격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 X선 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		기타 특이사항	
문 신			

약 물 검 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	----	-----	------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 격	합격 사유
합격 여부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4월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계급과 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예: 경감 변호사, 경위 헬기조종, 경장 함정요원, 순경 공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결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야 합니다.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병원 작성 항목: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서>

의뢰기관명		수검자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요양기관번호		Chart No.		과명/병동		검체 채취 담당	(서명)
소변 채취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	담당의사		(서명) ☎		
검사의뢰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					
마약류 6종 간이검사 결과 (양성 약물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필로폰(메스암페타민) <input type="checkbox"/> 엑스터시(MDMA) <input type="checkbox"/> 대마 <input type="checkbox"/> 코카인(벤조일렉고닌) <input type="checkbox"/> 케타민 <input type="checkbox"/> 아편(모르핀)							
소변 검체 채취방법	• 멸균된 깨끗한 plastic container (ex: 15 mL conical tube)에 보존제 없이 5~10mL 이상 채노 • 수검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정확히 기재 • 채노 시 희석 또는 불순물을 첨가하지 않는지 확인 •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는 1차 간이검사(선별검사)에서 양성인 검체를 그대로 의뢰						
정밀검사기관	(기관명) / (주소)			(FAX)			(TEL) /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병원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해양경찰청 및 마약 정밀검사 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지방청, 응시번호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개월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이용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개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민감정보 제3자 제공

구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채용 신체검사 결과(마약검사 결과 포함)	채용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개월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기관	제공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마약정밀검사기관 해양경찰청 및 중부서해남해동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응시 지방청, 응시번호, 신체검사 결과(마약검사 결과 포함)	채용 신체검사(마약검사 포함), 신체검사 합격여부 판단, 수사기관 제공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마약류 정밀검사 의뢰 동의서>

상기 마약류 6종에 대한 간이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정밀검사 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밀 마약검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신체검사 판정결과 '판정보류'로 처리되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게 됩니다. 정밀검사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비용은 신청자(응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마약 정밀검사 의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검자(응시자) 작성 항목>

응시분야:	응시지방청:	20 .	응시번호:	성명: (서명)
-------	--------	------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미터 달리기(초)	13.0 이하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 이하
	좌우약력 (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50미터 수영(초)	40 이하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101 ~110	111 ~120	121 이상
여자	100미터 달리기(초)	15.5 이하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31 이상	30 ~28	27 ~25	24 ~22	21 ~19	18 ~16	15 ~13	12 ~10	9 ~7	6 이하
	좌우약력 (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50미터 수영(초)	40 이하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101 ~110	111 ~120	121 이상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좌우약력, 50미터 수영 중 한 종목 이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좌우약력의 경우 좌우 각각 측정된 수치 중에서 최대값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4.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5.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 2]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방법(제6조제2항 관련)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p>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p> <p>나. 시설기구 1)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 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p> <p>다. 측정방법 1)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달리게 한다.</p> <p>라. 기록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수기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p>
악 력	<p>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p> <p>나. 실시도구 악력기</p> <p>다. 측정방법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p> <p>라.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를 실시하여 최댓값을 기록한다.</p>
윗몸일으키기	<p>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p> <p>나. 시설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 이상)</p> <p>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발을 30cm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각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3)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갔을 때 1회로 하고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p>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라. 기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도중 목뒤에 각지를 낀 손이 빠지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팔굽혀펴기	<p>가. 검사요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3) 검사원 1명 이상 <p>나. 실시도구 매트, 계측기(1대이상)</p> <p>다. 측정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붕 간격이 5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p>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p>
수 영	<p>가. 검사요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p>나. 시설기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m 수영장 (25m 수영장 왕복 가능) 2) 초시계(1개 이상) 3) 출발신호기 1개 <p>다. 측정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영장 레인을 사용한다. 2)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p>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응시자의 신체의 일부가 도착지점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p>

비고 :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평가 진행순서) 악력 -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 - 100m 달리기 - 수영

▶ (유의사항)

가. 현장 사정 및 응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측정방법 및 진행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나. 구체적인 평가방법(변경사항 등) 및 유의사항은 체력검사 당일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현장 안내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2019.1.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붙임] 참조)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체력시험 대상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참고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

- ▶ www.kada-ad.or.kr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 기타, 직업 : 기타
- ▶ www.kimsonline.co.kr
- ▶ www.druginfo.co.kr

참고**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I. 금지약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판정기준

약물군	약물 성분	판정기준	단위
동화작용제	drostanolone	검출 시	
	methenolone	검출 시	
	methasterone	검출 시	
	testosterone	검출 시	비고참조
	1-testosterone	검출 시	
	clenbuterol	검출 시	
	stanozolol	검출 시	
이뇨제	hydrochlorothiazide	검출 시	
	chlorothiazide	검출 시	
	furosemide	검출 시	
흥분제	methylhexanamine	검출 시	
	methylephedrine	> 10	μg/ml
	ephedrine	> 10	μg/ml
마약류	Buprenorphine	검출 시	
	dextromoramide	검출 시	
	diamorphine(heroin)	검출 시	
	fentanyl	검출 시	
	hydromorphone	검출 시	
	methadone	검출 시	
	morphine	검출 시	
	oxycodone	검출 시	
	oxymorphone	검출 시	
	pentazocine	검출 시	
	pethidine	검출 시	

※ 비고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은 신체 발육 및 필수대사에 필요한 호르몬으로서 인체 내에서 일정량이 생성(내인성)되며, 인체에서 대사되어 에피테스토스테론(Epitestosterone)으로 변화하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테스토스테론과 에피테스토스테론의 비율(T/E ratio)은 1:1임. T/E ratio가 4:1 초과시에는 외부로부터 외인성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투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II.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양식)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제6조 제9항 관련)

점수 분야	5 점	3 점	2 점	1 점
운 전	-	-	-	- 1종대형 1종보통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무도 4단 이상	- 무도 3단	- 무도 1·2단
정보처리 (전 산)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통신 (통 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전자기능장 - 전자계산기·전자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 통신·정보통신·방송 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전자 산업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통신선로 ·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통신기기 ·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E-Test 프로페셔널 1급 (워드, 엑셀, PPT 중 1)
법무·특허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전산회계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기능장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기사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산업기사	-
재 난	- 건설안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산업 기사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	수상구조사 1급 이상	-	인명구조(요원)강사 수상구조사 2급	- 인명구조요원
의 료	-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임상 심리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 심리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점수 분야	5 점	3 점	2 점	1 점
영 어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일 어	-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2 - J.P.T 7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 국 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 수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
레 저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4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수산·어로	- 수산양식기술사 - 어업기술사	- 수산양식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 수산양식기능사
드 론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조종자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해양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 처리기사	-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 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무도가산점 인정 단체

구분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48)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제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대한권투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 세계합기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現대한민국합기도지도자협회) △ 대한검도연합회 △ 한국무예진흥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은 '25. 7. 1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	택견보존회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사)대한수중 핀수영협회	02-420-4293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35-4612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사)대한안전연합	062-222-0841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3-7913	(사)대한구조협회	054-476-2119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51-714-3695	(사)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협회	02-394-1331 031-943-4447
(사)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070-5057-3377	(사)복지와 건강	055-755-7800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063-221-980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 '18.11.10 지정취소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051-404-0900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02-422-6119
* '23.1.16. 지정취소		* '18.11.17~'22.6.19 지정취소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 고객센터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확인

※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

ex)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18.11.9.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사이에 취득한 자격증 인정 X

타 기관 사전등록 어학성적 이관신청(본인)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gosi@korea.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문의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1800-6634) 또는 채용기관으로 연락

통합채용포털 ID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자격증명	
수험번호(등록번호)	
취득일	
점수 · 인정 등급	
사전등록 기관	
타기관 사전등록 화면 (자격증명, 수험번호 등이 확인되는 사진첨부)	

※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채용담당기재	접수일자	※ 채용담당기재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채용 서류를 보관하는 기관에서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해드립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보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